

-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11월 10일

나. 제 안 자 : 박세채 의원 외 5인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11월 16일

제1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박세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규제된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자동차 관련 시설에 검사장을 포함시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도시계획조례 【별표16】 하목에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동호 라목(검사장)을 삽입

라. 참고사항

-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
 -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서
- 정비공장(자연녹지 지역에서 설치 가능)에서도 자동차 검사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 자동차 검사만 실시하는 검사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